두엄누리회보

제41호

2006년10월31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헌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자연순환농업 연구로드맵 작성을 위한 현장 협의회

지난 10월 12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타 회의실에서 농진청 관계자 및 농림부, 농협, 부산물비료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을 위한 유관기관 현장 협의회가 열렸다.

이 협의회에서 농진청은 가축분뇨 퇴. 액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반, 가축분뇨 자원화반, 환경영향평가 반, 농경지이용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연구개발 로드맵에 대한 각 반별 연구현황 및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가축분뇨 **퇴. 액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반**은 「비료분류체계 개편」「가축 분뇨 발효비료(액)의 기준 현실화」「퇴. 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설정」「퇴비 수분 함량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반**은 「 가축분뇨 발생량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저비용 고효율 처리기술」「고품질 퇴액비 생산기술」「바이오가스 생산 및 분뇨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을 중장기 연구과제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반**은 가축분뇨 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농경지 투입이 토양 및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생물학적 환경영향평가 기술」「환경영향평가 모델링기술」「가축분뇨 시용시 농경지 양분수지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편성키로 했으며, **농경지이용 반**은 「논, 밭, 시설재배지, 경사지, 난지 작물에의 가축분뇨 퇴. 액비 활용기술 연구개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협회는 가축분뇨 퇴·액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용에 대해 이 법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만 받으면 그 배출물을 바로 비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과「배출자인 축산농가가 생산자로 정의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생산, 유통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비료 관리법과 상충되는 점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 건의하였다.

또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장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

고 하위 법령 마련 시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원화반 연구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액비위주의 자원화 방향에 대해 현재 보급되어 있는 자원화 시설의 80%이상이 퇴비화 시설임을 감안하여 퇴비화 정책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특히 시범 포 사업이 모두 액비사용위주로 되어 있어 퇴비도 함께 시용하여 경종농가가 퇴비와 액비 중 편리하고 효율이 높은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더 많은 가축분뇨가 활용되게 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반 과 농경지이용 반의 연구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농지에 투입되는 모든 유기물은 충분히 발효가 된 제품만이 농업에 도움이 되며 그렇지 못한 제품이 주는 피해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우리나라 농업 형편에 맞는 가축분뇨의 처리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처리 및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그동안 가축분뇨를 실제로 처리 활용해온 것은 퇴비 생산업체이므로 축산농가가 장소나 인력 문제 등으로 자가 처리하지 못하고 퇴비생산업체에게 위탁 처리 할 경우 실제 처리하는 퇴비생산업체에게도 처리시설자금의 혜택이 돌아오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최종 마련되는 자연순환농업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은 농촌진흥청장이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 편파적용

친환경농업육성법 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일반친환경농산물, 저 농약농산물, 무 농약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는 유기농산물, 저 농약농산물, 무 농약농산물 등 3단계)

이중 전환기유기농산물재배와 유기농산물재배시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재배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3)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유기질비료를 투입할 수 있다.

(5)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하며, 축분비료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는 2004년12월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는 유박 및 유기질비료의 사용은 허용한 채 2005년1월부터 축분비료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 보조비료의 판매량은 2005년 이전 10%안밖에 불과하던 유기질 비료가 1년 사이 무려 35%까지 증가하여 버렸다.

유박등 유기질비료의 원료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업 육성법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시행규칙보다 진흥청 고시가 우선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위법은 그대로 두고 몇몇이 모여 결정한 고시로 편파 적용함으로 한 분야에 불이익은 물론 국가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이 일을 담

당하였던 당사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박 및 유기질 비료의 원료는 비료가 아닌 사료로 수입된 물질들이며 사료로 수입되어 동물을 통한 배설물은 농업자재가 될 수 없고 사료로 수입된 곡물이 직접비료로 사용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연 순환의 이치도 거꾸로 돌려놓는 법칙인 것이다.

2차 회의까지 거쳤다는 자재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었기에 이런 온당치 못한 결정을 내려 수많은 축산농가와 퇴비생산업체들의 울분을 자아내게 하는지 그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현재 인증되어 유통되는 유기농산물은 법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자재를 사용한 반쪽자리 유기농산물이며 그것도 자국 내 물질순환의 고리를 끊어가며 억지로 인정하는 적법 하지 않은 농산물이라 하여도 크게 지나치지 않은 듯싶다.

또 위법성에 대해서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인증기준에 커다란 결함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공급관련 회의 개최

지난 10월23일 농림부 소회의실에서 200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관련 회의가 농림부 조 원량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주제로 열렸다.

우리 협회 김 상원 회장과 농협중앙회 임 병교 팀장,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박 상욱 이사장, 비료공업협회 이 인건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금년 농협중앙회가 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2007년 사업계획의 방안을 논의 하였다.

▲지원계획은 -.물량:120만톤, -.금액:420억 ▲사업시행주체는-.주관기관: 농협중앙회 -.사업시행기관:지역조합 으로 06년과 동일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공급기관 선정, 지원물량배정, 공급업체 선정기준, 공급가격, 납품방법, 사업 참여 제한기준 등에 대해 논의 되었다.

공급가격결정, 업체선정 등 각종 사안에서 사업시행 주체인 농협과 공급업체인 우리 단체 간에 이견이 많아 무려 5시간이나 걸리는 마라톤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협회 김 상원 회장은 연차적으로 확대 시킨다고 발표된 보조금액이 동결된대 대해 화학비료의 보조가 없어진 만큼 농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고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지방비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함께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 원량 친환경농업과장은 애초 52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며 국회통과 전까지 지원 금액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지자체 지원과의 연계는 이미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공급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구매가격 결정권이 지역조합에 있었던 올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금액결정권은 지역본부에서 시담 후 추가계약 없이 결정해 줄 것을 건의 하였고 원료 수불부 등 각종

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양식이 현장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 기재하기 편하게 수정할 것을 건의 하였다. 농림부 조 원량과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납품업체 지정 시 판매실적 1억 이상 등 진입장벽 철폐▲참여제한 기준에서 기타 규격 미달과 유해물질 검출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공평하게 처리 ▲지역농협과 품목 조합 간에 2중지원 방지 ▲퇴비장 보유 지역축협 공급기관에서 제외 등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유기조합 박 상욱 이사장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아미노산 발효부산비료(액)은 부산물 비료로 지정되어 있으나 혼합유기질비료에 혼입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며 보조금에 농림부 비료계정 외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자금과 음식물 찌꺼기 처리를 위한 환경부 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가운데부터 시계방향 농림부 조원량 과장, 장명철 사무관. 박상옥 이사장, 조남성 국장, 농협 임규원 차장, 이인건 이사, 김상원 회장, 농협 임병교 팀장

농협중앙회 임 병교 비료팀장은 단가계약에 대해 지역본부에서 운반비를 포함한 단가계약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원료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료수불부와 각종 일지작성을 더욱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품질 관리를 위해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 회의결과는 최종적으로 감사원과 협의 후 농협중앙회와 정리하여 올해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납품업체 재 지정업무가 끝나는 대로 시행지침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농협 납품업체 재 지정업무 마감

농협납품 지정업체 지정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후 처음으로 재 지정업무가 실시되었다.

올해는 2005년부터 실시한 생산능력검증과 겹쳐 생산능력검증이후 시설이 증설된 업체만 방문하는 것으로 대신 하였다.

매번 똑같은 서류를 2년마다 작성해야 하는가 하는 일부 불만의 소리도 있으나 이 기회에 주기적으로 시설도 점검해 보고 생산업 등록 등 각종 관련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협회와의 관계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저런 문제를 의논한다는 것은 서로의 믿음도 키우고 각종 정보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바쁜 중에도 서류작성에 신경써주신 전회원사 제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